

# 박물관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 박물관은 성균관대학교 부속 박물관(이하 “본관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관은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역사적 유물을 발굴 및 수집하고 이를 전시하여 학술연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업)** 본관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유물의 수집 및 보관진열
2. 유물 유적의 조사 발굴
3. 출판물 간행 및 발표회 개최
4. 기타 본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관장)** ① 관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②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③ 관장은 본관을 대표하여 관무를 통할한다.

**제5조(일반직원)** ① 본관에는 관장을 보좌하여 본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일반사무를 담당할 일반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일반직원은 본교 직원 가운데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의2(학예사)** ① 본관에는 박물관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·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할 학예사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학예사는 석사학위과정 수료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제2조의 목적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 가운데서 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의3(조교)** ① 본관에는 필요한 경우 전시·학술서 발간 기타 특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예사를 도울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 조교의 자격과 임기는 본교 조교임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 3 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(설치)** 본관에는 박물관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7조(구성)** ① 운영위원회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관장의 제청으로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부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그러나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8조(심의사항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유물구입에 관한 사항

5. 기타 관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

**제9조(회의)**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## 제 4 장 소장품의 수집

**제10조(보관)** 본관은 발굴, 구입, 기증에 의하여 유물을 수집, 소장, 보관한다.

**제11조(수집방법)** 소장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.

1.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이 공부 또는 실무실습중에 발굴 채집한 문화재는 이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구입품은 해당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3. 기증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 제 5 장 소장품의 관리 및 관람

**제12조(반출)** 본관의 소장품은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장품을 출품하고 자 할 경우에는 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

**제13조(관람시간)** ① 본관의 개관은 다음과 같다.

평 일 : 10:00 ~ 16:00

토요일 : 10:00 ~ 12:00

②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휴관한다. 다만, 관장은 필요에 따라 개관, 휴관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**제14조(관람자격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할 수 있다.

1. 본교 학생 및 교직원
2. 기타 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

**제15조(관람자의 준수사항)** 관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진열품에는 손을 대지 못한다.
2. 관내에서는 잡담 및 흡연을 금한다.
3.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16조(촬영 및 모사)** 관람자가 학술연구에 필요한 소장품을 촬영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7조(변상)**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6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한 학예사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199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의 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